

콘텐츠 관련 공모전의 저작권 소유와 저작권 침해 분석

- I. 서론
 - 1. 연구배경과 목적
 - 2. 연구범위와 방법
- II. 공모전의 저작권 소유와 저작권 침해
 - 1. 공모전의 저작권 이해
 - 2. 공모전의 저작권 분석
- II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박경철, 정선미

초 록

공모전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다. 공공기관부터 개인 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최의 공모전 요강을 분석해보면 저작권을 주최 측이 가지려는 경향이 매우 크다. 공모전 요강 중 일부는 일종의 계약서이다. 주최 측은 요강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데 반해, 개인은 계약서로 보기보다는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한 형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공모전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콘텐츠 저작권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콘텐츠 저작권 또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공모전 요강에서 드러나는 저작권 소유와 저작권 침해 항목을 분석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전의 저작권 조항은 계약서 역할을 한다. 공모전의 저작권 항목은 갑과 을의 관계인 주최 측과 수상자 모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바람직한 공모전의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개인 사업자까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주최 측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작권의 표기: 분명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 해석의 범위: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기가 아닌 구체적인 표기를 해야 한다. 세 번째, 저작재산권의 대가: 주최 측이 수상작의 저작재산권 소유나 이용이 필요할 경우, 저작재산권의 권리 소유나 이용에 맞는 대가의 상금액을 고려한 적절한 재산적 사용의 권리를 표기해야 한다. 네 번째, 사용기간: 저작재산권의 사용기간을 표기해야 한다. 다섯 번째, 권리의 범위: 주최 측이 필요로 하는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한정 표기해야 한다. 여섯 번째, 상호존중: 일방적 계약이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에 입각한 쌍방계약의 개념으로 저작권 관련 항목을 표기해야 한다.

주제어 : 공모전, 저작권, 저작권 소유, 저작권 침해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공모전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다. 과거 상당수의 공모전이 해당 분야의 전공 대학생이나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범위였다면, 현재는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대상이 넓은 형태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한 예로 주최 측이 행사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대외 홍보용 공모전의 경우, 나이를 불문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양한 목적의 공모전이 많아지고 대중의 아이디어가 공모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활발한 사회적 참여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공모전의 다양성과 참여라는 긍정적인 면들이 있지만, 공모전의 부정적인 면들 또한 상존한다. 부정적인 것은 공모전으로 말미암은 폐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전 안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이다. 현재진행형으로써 문제 제기가 되지 못하는 상태로 다수의 공모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문제점은 바로 저작권에 관한 것이다.

마치 사회 전반적인 유행처럼 저작권에 대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영화나 음원 등의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권리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다. 그에 반해 공모전에 응모하는 개인들이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재산권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계약과도 연관되는 문제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구두 계약도 계약의 효력을 가지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시에 메일도 문서로서의 증거력을 가진다. 즉 공모전의 저작권은 계약과 관계있음에도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현상공모에서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현상광고자에게 양도하는 청약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참조. 가) 다른 예로 공정위는 현상설계 수상작의 저작권이 주최자가 아닌

설계자에 있다고 보고 주최자가 설계자와 별도로 협상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참조. 나) 두 예에 등장하는 ‘청약’ 과 ‘대가 지급’ 용어가 계약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모전 요강 중 일부를 계약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서 공모전을 분석하였다. Daum의 국어사전에서 계약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떤 일에 대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미리 정해 놓고 서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¹⁾ 계약에는 민법 제3편 제2장 14종류(계약, 증여, 매매, 교환,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계약인 전형 계약과 그 외의 계약인 비전형 계약이 있다. 또한, 쌍무 계약과 편무 계약, 유상 계약과 무상 계약, 낙성계약과 요물 계약, 요식 계약과 불요식 계약이 있다.²⁾

공모전은 전형 계약인 현상 광고의 내용과 유사한 면이 있다. 현상 광고는 광고자가 지정된 어떤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응모자가 해당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림 1>에서 이를 공모전에 대입하면, 공모전은 주최자가 지정된 어떤 행위를 하여 입상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입상자가 해당 공모전에서 정한 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셈이다.

<표 1>은 (주)대웅제약의 “2012 대웅 곰 캐릭터 공모전” 에서 ‘참고사항’ 이란 항목으로 ‘시상안내’ 밑에 있는 계약 관련 조항이다. ‘시상안내’ 의 일부를 보면, 주최자((주)대웅)는 곰을 주제로 한 캐릭터를 만들어 입상한 사람에게 ‘대상 1,000만 원, 최우수상 200만 원, 특별상 100만 원(장학금), 입선 상장 및 상품’ 으로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입상자는 해당 공모전에서 정한 조건(<표 1>의 6가지 항목)에 동의함

* 이 논문은 2012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제 1저자: 박경철, 교신저자: 정선미.

1) Daum, www.daum.net, 검색어 : 계약, 2012. 10. 30.

2) Naver, www.naver.com, 검색어 : 계약의 종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jo4444444&logNo=150139233994>.

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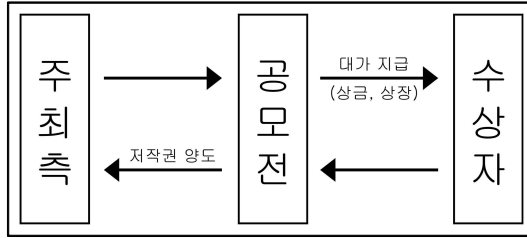


그림 1. 공모전의 대가 지급과 저작권 양도

③번에서 ‘수상작에 대한 권리는 000에 귀속되며 제출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란 항목이 있다. 수상작에 대한 권리가 주최 측에 귀속되며, 그 대가로 상금을 주고 ⑤번에 의해 상금에 대한 세금(제세공과금)이 수상자에게 부담된다는 내용이다.

| 순번 | 내 용(참고사항) |
|----|---|
| ① | 심사기준 미달 시 대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② | 수상작의 경우, 작품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③ | 수상작에 대한 권리는 000에 귀속되며 제출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 ④ | 선정된 작품의 상품화 시 원작자로서의 참여기회를 보장합니다. |
| ⑤ |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입니다. |
| ⑥ | 기존 작품을 표절 및 모방한 작품과 타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추후 발견 시 당선이 취소됩니다. |

표 1. 공모전의 계약과 관련한 조항 예

공공기관부터 개인 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최의 공모전 요강을 분석해보면 개인의 저작권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주최 측이 공공성을 띄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 저작권을 주최 측이 가지려는 경향이 매우 크다. 어떻게 보면 공모전을 이용해 개인의 콘텐츠를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인

식의 저변을 보여 주고 있다.

주최 측은 조항을 통해 저작권에 관한 주장 및 권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데 반해, 대다수 학생은 이를 계약서로 보기보다는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한 형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어쩌면 주최 측에 유리한 일방적 계약 항목이 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학생이 공모전 요강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거나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의 무지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공모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생각해볼 시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최 측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콘텐츠 저작권만 보호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콘텐츠 저작권 또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공모전 요강에서 드러나는 저작권 소유와 저작권 침해 조항을 분석함으로써 공모전의 저작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연구 내용은 분야별로 상세히 공모전을 소개하는 디자인 정글의 공모전을 선택하였으며, ‘분야별 공모’ 중 ‘캐릭터/애니’ 항목에서 30개를 선정하였다.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기준을 ‘캐릭터/애니’ 항목에서 일련의 연속선상에 있는 공모전으로 한정하였다. 공모전명: 제3회 UCC & Story 바람직한 간판문화 공모전 (접수기간: 09/10~10/10) ~ 공모전명: 글로벌 막걸리 UCC 공모전 & 서포터즈 모집(접수기간: 07/05~08/05)

‘캐릭터/애니’ 항목임에도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공모전 외에 여러 형태의 공모전이 포함되어있었다. 자연스럽게 여러 형태의 공모전을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인 공모전의 흐름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 30개의 공모전을 분류하면서 정확한 구분보다는 대략적인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여 캐릭터(7) / 만화(5) / 애니메이션(4) / UCC(5) / 디자인(5) 외에 기타(4)로 분류

하였다.

연구방법은 크게 ‘공모전의 저작권 이해’, ‘공모전의 저작권 소유’, ‘공모전의 저작권 침해’, ‘공모전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안’으로 구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첫 번째, 저작권의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하였다. 저작권에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용어에 대한 이해가 공모전의 저작권을 이해하는 밑바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공모전 분야에 따른 주최 측의 저작권 소유에 관한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야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 공모전 주최 측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네 번째,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이 저작권 침해를 받았을 때 일방적인 손해를 입기보다는 각자의 판단에 따른 대항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II. 공모전의 저작권 소유와 저작권 침해

1. 공모전의 저작권 이해

저작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권리는 구분되는 권리이자 저작권에서 중요한 법적 용어이다.

$$\text{저작권} = \text{①저작인격권} + \text{②저작재산권}$$

그림 2.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포함된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자에 전속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매매나 양도 등 재산적 형태를 타인에게 넘길 수 없는 저작자의 영구불변한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

된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 또는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공표권’, 저작물의 제목과 내용,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 원 저작물 또는 복제물의 공표를 하면서 저작자 실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권리이다.

이에 반해 ②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매매나 양도 등 재산적 형태를 타인에게 넘길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재산의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이 저작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통상 이 권리 때문에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된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복제권’, 원 저작물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는 ‘배포권’,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는 ‘전송권’, 원 저작물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권’,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이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권리이다.

2. 공모전의 저작권 분석

1) 공모전의 저작권 소유

<표 2>에서 캐릭터 공모전(7)을 살펴보면, 수상작의 저작권 소유는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다. (항목 : ① 저작권은 (주)엠게임에 귀속됩니다. ② 수상작의 지적 재산권은 (주)못된 고양이에 귀속됨. ③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당사에 귀속 ④ 입상작의 저작권은 (주)천재교육에 귀속 ⑤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 측인 경찰청에 귀속됨 ⑥ 입상작에 대한 모든 권한은 (사)한국마이스터정책연구원에 귀속됩니다. ⑦ 당선작의 저작권은 본원에 귀속)

캐릭터 공모전은 공공기관 또는 사업자의 구분 없이 주최 측

모두에서 저작권을 소유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저작권과 관련한 명칭은 ‘저작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및 소유권’, ‘일체의 저작권’, ‘모든 권한’으로 달리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같다. 또한 ‘수상작’, ‘당선작’, ‘입상작’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권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 순번 | 공모전명 | 주 최 | 저작권 소유 |
|----|--------------------------------|----------------|----------------|
| ① | 엠게임 캐릭터 공모전 | 엠게임 | (주)엠게임 |
| ② | 내가 못된 고양이 N.CAT이다. | (주)못된고양이 | (주)못된고양이 |
| ③ | 제1회 디자인스코리아, 포토스코리아 캐릭터 공모전 | TCNMEDIA | TCNMEDIA |
| ④ | 제9회 천재교육 캐릭터 공모전 | (주)천재교육 | (주)천재교육 |
| ⑤ | 포돌이 2.0 캐릭터 공모전 | 경찰청 | 경찰청 |
| ⑥ | 마이스터대전 마스코트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 | (사)한국마이스터정책연구원 | (사)한국마이스터정책연구원 |
| ⑦ | 환경표지 홍보캐릭터 공모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표 2. 캐릭터 공모전의 저작권 소유

<표 3>에서 만화 공모전(5)을 살펴보면, 수상작의 저작권 소유는 주최 측이나 저작자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다. (항목 : ① 저작권은 (주)ESTsoft에 귀속됩니다. ② 수상 작품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고,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은 길벗스쿨에 있습니다. ③ 표기 없음 ④ 본 공모전에 입상된 작품의 복제권, 임의변경권, 광고 및 홍보 사용권 등 행사, 판매, 유통, 홍보활동에 드는 모든 활동의 권리는 주최 측에 귀속됩니다. ⑤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진천

경찰서에 귀속)

<표 2>의 캐릭터 공모전에서는 주최 측에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간단히 표기한 것에 비해 <표 3>의 만화 공모전에서는 출판권, 배타적발행권, 복제권, 임의변경권 등의 구체적인 표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연재라는 만화적 속성 탓에 구체적인 계약 형태로 명시하고자 하는 주최 측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A) ①의 경우, ‘응모자 유의사항’에서 ‘대상 당선자는 시나리오 작가와 협력하여 해당 작품으로 카발2 만화를 6개월간 필수적으로 연재를 진행해야 합니다. / 당선 상금에는 6개월간의 연재 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만화 단행본이 출판되는 경우 인쇄의 40%를 받게 됩니다. / 저작권은 (주)ESTsoft에 귀속됩니다.’이다. 이처럼 대상 당선자를 선발하여 연재를 목적으로 하는 공모전도 있다.

| 순번 | 공모전명 | 주 최 | 저작권 소유 |
|----|-----------------------|------------|-----------|
| ① | 카발2 만화 공모전 | ESTsoft | ESTsoft |
| ② | 제2회 길벗스쿨 지식교양만화상 | 길벗스쿨 | 저작자, 길벗스쿨 |
| ③ | 제4회 한의학 만화공모전 | (사)대한한의사협회 | 표기 없음 |
| ④ | 제2회 ‘우리땅 우리생물’ 웹툰 공모전 | 국립생물자원관 | 국립생물자원관 |
| ⑤ | 6대 폭력 근절을 위한 카툰 공모전 | 진천경찰서 | 진천경찰서 |

표 3. 만화 공모전의 저작권 소유

<표 4>에서 애니메이션 공모전(4)을 살펴보면, 수상작의 저작권 소유는 주최 측이나 저작자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다. (항목 : ① 표기 없음 ② 수상작의 모든 저작권은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귀속됨 ③ 선정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음 ④ 기본적으로 공모전에 제출한 3D 콘텐츠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음)

<표 4>에서 보듯이 애니메이션 공모전에서는 저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관 차원에서 애니메이션을 중요한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창작 지원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관이 저작권을 취득하기보다는 저작자의 권리를 중요시하며, 사업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맞추고 있는 것은 공모전의 모범적인 저작권 사례이다. 즉 주최 측과 수상자 간의 저작권 귀속의 모범 사례이다.

| 순번 | 공모전명 | 주최 | 저작권 소유 |
|----|----------------------------|-----------------|-----------|
| ① | 날애니공모전2012 별을 찾아라 |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 표기 없음 |
| ② | 2012 AAR 창작 애니메이션 아이디어 공모전 | 강원정보문화진흥원 | 강원정보문화진흥원 |
| ③ | 제8회 디지털 애니메이션 공모전 |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저작자 |
| ④ | 제2회 대한민국 3D 콘텐츠 공모전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자 |

표 4. 애니메이션 공모전의 저작권 소유

<표 5>에서 UCC 공모전(5)을 살펴보면, 수상작의 저작권 소유는 ④를 제외하고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다. (항목 : ① 수상작의 저작권은 주최(주관) 측에 귀속 ② 입상작(특별상제외)에 대한 모든 권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귀속됨. ③ 수상작품의 저작권 및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주최사에 귀속 ④ 표기 없음 ⑤ 당선작의 저작권(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귀속됨.)

UCC 공모전은 최근 들어 자주 열리는 공모전이다. 표에서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기관에서도 UCC 공모전을 개최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공모전을 개최하는 사업자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주최 측이 저작권을 소유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주최 측이 저작재산권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출판권, 복제권, 배포권 등으로 명시하여 UCC 공모전의 행사를 홍보하는 등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최 측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 순번 | 공모전명 | 주 최 | 저작권 소유 |
|----|-----------------------------|---------------|------------|
| ① | 제4회 청소년 UCC 공모전 | 봉은사 | 봉은사 |
| ② | 글로벌 막걸리 UCC 공모전&서포터즈 모집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
| ③ | 책과 만나는 독서 UCC 공모전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
| ④ | 제2회 부산실버영상제 영상공모전 | 부산시노인종합 복지관협회 | 표기 없음 |
| ⑤ | 제3회 UCC&Story 바람직한 간판문화 공모전 | 한국지방재정공 제회 | 한국지방재정공 제회 |

표 5. UCC 공모전의 저작권 소유

<표 6>에서 디자인 공모전(5)을 살펴보면, 수상작의 저작권 소유는 표기가 없는 ①과 ⑤를 제외하고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다. (항목 : ①표기 없음(수상작은 실제 제품화됨) ② 캐릭터 및 명칭, 이용 등 제반 권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귀속됨 ③ 당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주)집모아에 귀속함 ④ 입상작 저작권은 매일신문이 가짐 ⑤ 표기 없음)

(B) 표기 없음의 ①에서는 상금 외에 다음과 같은 혜택을 표기하고 있다. ‘수상작은 실제 제품화되며, 티셔츠 내에 디자이너 이름 표기. / 제품화 후 판매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이 내용으로 유추해보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에 제품으로 생산하는 일종의 라이선스를 획득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모전을 통한 저작자와 기업 간의 이러한 관계는 긍정적인 공생관계에 해당한다.

<표 7>에서 조사 대상이었던 기타 공모전(4)을 살펴보면, 수상작의 저작권 소유는 표기가 없는 ①을 제외하고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다. (항목 : ① 표기 없음 ② 수상작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함 ③ 당선작의 저작권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에 있음 ④ 수상작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최기관에 귀속됨) ②의 아이디어나 ③의 스토리텔링, ④의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의 공모전에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 순번 | 공모전명 | 주최 | 저작권 소유 |
|----|-------------------------|---------------|----------|
| ① | 제8회 디자인레이스 티셔츠 디자인 공모전 | Culture Group | 표기 없음 |
| ② | 한국철도도시시설공단 사회공헌 엠블럼 공모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
| ③ | 제2회 Gelly Roll 일러스트 공모전 | (주)짐모아 | (주)짐모아 |
| ④ | 제10회 매일신문 광고대상 광고 공모전 | (주)매일신문사 | (주)매일신문사 |
| ⑤ |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벽화> 공모전 | 현대오일뱅크 | 표기 없음 |

표 6. 디자인 공모전의 저작권 소유

| 순번 | 공모전명 | 주최 | 저작권 소유 |
|----|----------------------------------|------------|------------|
| ① | 아트페이 신진아티스트 발굴프로젝트 여섯 번째 전시작품 공모 | 아트페이 | 표기 없음 |
| ② | 한강 여주저류지 및 강점선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
| ③ | 제1회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공모전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 ④ |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표 7. 기타 공모전의 저작권 소유

위에서 살펴본 30개의 공모전에서 저작권 소유는 표기 없음(6), 저작자(2), 주최 측(22)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8>). 표기 없음(6)은 공모전에서 저작권 소유와 관련한 사항을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공모전일 경우, 즉 작가의 저작권을 원천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을 경우가 크다. 저작자(2)는 관((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애니메이션 공모전에서만 보이는 드문 사례이다. 주최 측(22)은 다수 공

모전에서 나타나는 주최 측에 저작권이 귀속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 표기 없음 | 저작자 | 주최 측 |
|--------|-------|-----|------|
| 저작권 소유 | 6 | 2 | 22 |

표 8. 저작권 소유 현황

2) 공모전의 저작권 침해

공모전 요강에는 <주의사항>이나 <기타> 등에 저작권과 관련한 중요 내용이 표기되곤 하는데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수상작의 저작권은 000에 귀속된다.’ 표현은 다를 지라도 주최 측에서 저작권을 소유하기 위한 공모전이 공공기관부터 사업자까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응모자는 공모전에 출품하는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표절 또는 도용이 사회 이슈가 되기도 하기에, 공모전에서 응모자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저작권 항목이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일면 타당하면서도 배치되는 성질을 가진다. 즉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면 주최 측에 권리가 넘어가면서 책임 또한 넘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권리는 갖지만, 만일의 문제에 관한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표 2>의 캐릭터 공모전 요강을 보면 모든 주최 측이 수상자의 저작권을 소유한다. 단순히 생각하면 주최 측이 캐릭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전을 개최하여, 캐릭터를 개발하거나 캐릭터 업체로부터 사지 않고서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최 측이 수여하는 상금이 캐릭터의 저작재산권을 사는 금액으로 적정하다는 문제가 있다. 예로 <표 2>의 ①인 ‘엠 게임 캐릭터 공모전’

을 보면 대상 200만 원, 우수상 50만 원, 장려상 30만 원, 인기상(2 작품)은 각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준다. 이들 총 5 작품은 공모전 요강에 의해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된다. 그럼 이 상금이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를 넘기는 데 있어서 타당한 금액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상은 제외하더라도 그 외의 상들이 저작권자의 권리 모두를 넘기는데 타당한 금액(10만원~50만원)이냐는 것이다.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느냐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모전의 저작권 관련 조항이 계약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응모자는 공모전 요강에서 계약 관련 조항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 갑과 을의 계약에서 갑이 주최 측이면 을은 수상자가 되며, 상금은 계약금에 해당한다. 계약의 ‘갑과 을의 관계’가 공모전에서는 ‘주최 측과 수상자의 관계’가 된다. 공모전에서 이 조항들은 주로 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며, 을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표 9>에서 (C)부터 (E)까지는 ‘수상작의 저작권, 저작권 및 소유권, 모든 저작권’의 약간씩 다른 표기지만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내용이다. (F)는 (C)~(E)와 비슷하지만, 표기를 다르게 하고 있다. 수상작의 저작권이 저자의 것임을 밝히면서, 정작 주최 측에 필요한 재산적 권리인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을 명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C) ‘수상작의 저작권은 000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서 ‘수상작의 저작권’이란 표기는 수상자인 저작자의 저작권, 즉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영구불변한 권리로서 재산적 형태를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이 맞는 표기이다. 또한, 주최 측이 저작권의 구체적인 표기 없이 단순히 기술하는 것은 저작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D) (주최 측 : TCNMEDIA)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

은 당사에 귀속 / 당선작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변경 및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적어도 ‘저작권과 소유권’은 ‘저작권재산권’으로 표기해야 하며, ‘변경 및 수정’은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변경 및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의 조항을 넣고 있는 것이다.

(E) (주최 측 :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수상작의 모든 저작권은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귀속됨. / 수상작의 상품화시, 제작공정상의 이유로 일부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수상작의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고, 일부 디자인을 변경한다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만, 이 또한 응모자가 응모하는 순간부터 계약에 동의하는 것이 된다.

그에 반해 주최 측과 저작자의 계약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서로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공모전 조항을 밝히는 예도 있다.

(F)(주최 측 : 길벗스쿨) ‘수상 작품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고,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은 길벗스쿨에 있음.’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음을 표기하고 있으나, 저작재산권의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은 주최 측에 있음을 표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으로는 <콘티 작화 부문>의 대상이 2,000만 원(선인세 1,500만 원, 창작지원금 500만 원), 우수상이 1,000만 원(선인세 700만 원, 창작지원금 300만 원)이며 <콘티 부문>의 대상이 800만 원(선인세 500만 원, 창작지원금 300만 원), 우수상이 400만 원(선인세 250만 원, 창작지원금 150만 원)이다. 또한 ‘선인세를 넘는 판매분에 대해서부터 추가 인세를 지급합니다.’라는 조항이 있다.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중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은 주최 측이 소유하지만 이에 따른 타당한 대가(추가 인세)를 저작자는 받을 수 있다. 주최 측과 저작자는 저작물을 두고 서로에게 필요한 형태로 계약을 맺는 셈이다. 즉 ‘수상작의 저작권은 000에 귀속된다.’는 한 줄로 저작권을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F)에서 비록 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모전임에도 주최 측이 저작자의 저작

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상호 간의 권리를 배려하고 있다.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쌍방의 입장을 배려한 계약의 형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알파벳 | 내 용 |
|-----|--|
| C | 수상작의 저작권은 000에 귀속된다. |
| D |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당사에 귀속된다. |
| E | 수상작의 모든 저작권은 000에 귀속된다. |
| F | 수상작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고,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은 000에 있다. |

표 9.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3) 공모전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안

가. “각종 회곡 공모 시 저작권의 문제” 라는 질의에 대해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는 “현상광고를 하면서 공모 요강에 ‘응모한 작품의 일체의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된다’ 는 식으로 광고하는 현상광고에 응모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현상광고자에게 양도하는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응모한 저작물을 현상광고자가 채택하는 것으로서 양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³⁾ 이처럼 공모전의 저작권 조항에 따라 응모자가 응모하는 순간 저작권 조항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상작은 양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려상 또는 입선일 경우,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주최 측에 양도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된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수상자로 연락을 받은 응모자가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상을 거절하는

3) 한국극작위크샵 10기, 회곡 공모시 저작권 문제,

<http://cafe.daum.net/9drama/8SnbSnb/84?docid=ybmE|8Snb|84|20070907221531&q=%B0%A2%C1%BE%20%B0%F8%B8%F0%B8%A6%20%C7%D2%20%B0%E6%BF%EC%20%C0%FA%C0%DB%B1%C7%20%B9%AE%C1%A6%B4%C2>

방법이 있다. 이때 응모자는 시상식에 가는 것을 거부하여 불참하면 수상이 취소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수상을 거부할 때 정확한 수상 거부를 표시해야 한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에서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50조 [해지의 효과]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담당자의 메일을 확인하여 메일로 수상을 거부한다고 알리는 방법과 담당자와의 통화를 녹취하여 수상을 거부하는 방법, 주최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인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의 방법들은 수상 거부를 통해 주최 측에 저작권을 귀속시키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행위이자 해지의 의사표시이다.

나. 유사 분야를 보면, 현상설계 수상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은 건축가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주최자가 저작권을 갖도록 해 설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 주최자가 저작권을 가지려면 설계자와 별도로 협상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5개 기관은 설계경기 지침에서 ‘입상작 저작권과 사용권은 주최자가 갖는다’는 조항을 삭제했다.”⁴⁾ 이의 조항을 공모전에 적용하면 주최 측의 저작권 조항은 수정되거나 삭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에서 주최 측이 수상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예들의 공모전도 있다. (G) (주최 측 :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저작권 관련 내용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해 주고, 공모전을 통한 애니메이션 제작의 활성화라는 측면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H) (주최 측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에 제출한 3D 콘텐츠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음. 수익 사업

4) 손택균, “공모전 당선작 저작권은 건축가 소유”, 『dongA.com』, 2009년 6월24일, <http://news.donga.com/3/all/20090624/8747508/1>.

이외의 목적, 즉 전시, 홍보, 연구, 세미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공모전을 지원해 주고 ‘수익 사업 이외의 목적’에만 사용하겠다고 정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 알파벳 | 내 용 |
|-----|-------------------------|
| G | 표시하지 않음. |
| H | 공모전에 제출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음. |

표 10. 응모자와 저작권

(A) (<표 3>의 ①, 주최 측 : ESTsoft)에서,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되며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응모자는 1회 분량의 만화를 제작하여 응모하는 방식이다. 즉 공모전 시작부터 주최 측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저작권은 주최 측의 소유이다. 공모전 요강에서 밝히는 일종의 계약금은 6개월간의 연재 고료가 포함된 1,000만 원과 만화 단행본이 출판되면 인세 40%를 받는 계약이다. 계약금과 추후 인세를 받는 계약은 작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공모전의 사례이다. 이처럼 적절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응모자들은 이 계약금과 여러 조항에 동의하여 공모에 응할 것이다.

<표 4>의 ②를 제외한 애니메이션 공모전은 주최 측과 수상자간의 저작권 귀속의 모범사례이다. (B) (<표 6>의 ①, 주최 측 : Culture Group)에서 일종의 라이선스와 인센티브의 계약 관계도 좋은 사례이며, (F) (주최 측 : 길벗스쿨)처럼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고 저작재산권의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은 주최 측에 있음을 표기하지만, 선인세를 넘는 판매분에 대해서부터 추가 인세를 지급하는 좋은 사례이다.

(I) (<표 5>의 ①, 주최 측 : 봉은사)에서 ‘수상작의 저작권은 주최(주관)에 귀속 / 응모작품은 공모전의 홍보 및 기타 활용에 사용될 수 있음’ 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수상작품의 저작권 소유의 문제도 있지만, 수상작품이 아닌 응모작품을 홍보 및 기

타 활동에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공모전이 주최 측의 목적에 의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최 측과 수상자의 상호 적정한 선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경우 주최 측이 UCC 영상으로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이나 계몽, 홍보 등의 공공의 이익이 포함된 활동 위주인 경우, 저작권의 소유 없이도 ‘수상작은 교육이나 계몽, 공모전의 홍보 등의 재산적 사용을 제외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음’ 이라는 표기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III. 결론

공모전의 수상작은 상금 유무와 상관없이 공모전에서 제시한 상을 받으면 수상작에 해당한다. 몇몇 공모전을 제외하고 조사된 공모전들은 적은 상금을 수여하거나 상장을 주고 있다. 다음 <표 11>은 캐릭터 공모전(<표 2>)의 상금 내용이다. 대상이 많게는 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한데, 우수상은 15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장려상은 50만 원에서 10만 원, 입선은 10만 원에서 기념품까지 상금 혹은 상품의 분포를 보인다. 이처럼 공모전에서의 수상작은 상장만을 받더라도 입선 이상은 수상작에 해당한다. 또한, 상금 또는 상장은 수상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종의 계약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모전의 저작권 조항은 계약서 역할을 한다. 갑과 을의 관계인 주최 측과 수상자 모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바람직한 공모전의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개인 사업자까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주최 측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저작권이 중요시되는 현시대 상황에서 개인의 저작권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과거보다 대중적인 저작권 인식의 저변이 넓혀졌기에 이제는 <표 12>에서 제시한 공모전의 저작권 기준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순번 | 대 상 | 우수상 | 장려상 | 입 선 |
|----|--------------------------|--------------------|------------------|------------------|
| ① | 300만원(1팀) | 100만원(2팀) | 30만원(3팀) | - |
| ② | 500만원(1팀) | 150만원(2팀) | 50만원(3팀) | 상품권(5팀) |
| ③ | 100만원(300만원 상당 고급자전거) | 30만원(은상) | 20만원(동상) | - |
| ④ | 300만원(1팀) | 100만원(최우수상, 2팀) | 50만원(4팀, 우수상) | 10만원(10명, 특선) |
| ⑤ | 200만원(1팀) | 50만원(1팀) | 30만원(1팀) | - |
| ⑥ | 100만원(1팀) | 50만원(2팀) | - | - |
| ⑦ | 200만원(91팀) | 20만원(2팀) | 상품권 10만원(1팀) | 기념품(10팀) |

표 11. 캐릭터 공모전의 상금 현황

첫 번째, 저작권의 표기에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 해석의 범위에서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기가 아닌 구체적인 표기를 해야 한다.

세 번째, 저작재산권의 대가에서 주최 측이 수상작의 저작재산권 소유나 이용이 필요할 경우, 저작재산권의 권리 소유나 이용에 맞는 대가의 상금액을 고려한 적절한 재산적 사용의 권리를 표기해야 한다.

네 번째, 사용기간에서 저작재산권의 사용기간을 표기해야 한다.

다섯 번째, 권리의 범위에서 주최 측이 필요로 하는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한정 표기해야 한다.

여섯 번째, 상호존중에서 일방적 계약이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에 입각한 쌍방계약의 개념으로 저작권 관련 항목을 표기해야 한다.

| 순번 | 명칭 | 내용 |
|----|-----------|--------------------------------|
| ① | 저작권의 표기 | 구체적인 용어 |
| ② | 해석의 범위 | 포괄적인 해석이 아닌 구체적인 해석의 표기 |
| ③ | 저작재산권의 대가 | 저작재산권의 권리에 맞는 상금 |
| ④ | 사용기간 | 저작재산권의 사용기간 표기 |
| ⑤ | 권리의 범위 | 주최 측이 필요한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한정 표기 |
| ⑥ | 상호존중 | 일방적 계약이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에 입각한 쌍방계약 |

표 12. 공모전 저작권 표기에 따른 제시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저작권 백서』, 디자인집, 2011.
-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만화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준 계약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5.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만화 콘텐츠 비즈니스』, 한국콘텐츠진흥원, 2005.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1.
-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디자인집, 2010.
- 박경철, 「만화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준 계약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통권 제10호(2006, 10), pp.55-72.
- 박경철, 「만화애니메이션 저작권 교육을 위한 대학교육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13호(2008, 4), pp.1-12.
- 손택근, “공모전 당선작 저작권은 건축가 소유”, 『dongA.com』, 2009년 6월 24일, <http://news.donga.com/3/all/20090624/8747508/1>.
- 한국극작위크샵 10기, “희곡 공모시 저작권 문제”, 2007년 9월 7일, <http://cafe.daum.net/9drama/8Snb/84?docid=ybmE|8Snb|84|20070907221531&q=%C8%F1%B0%EE%20%B0%F8%B8%F0%BD%C3%20%C0%FA%C0%DB%B1%C7%20%B9%AE%C1%A6>.
- 디자인정글 - 공모전, http://contest.jungle.co.kr/designnews/new_contest/new_contest/contest_list.asp?iPage=1&vCateSub=132&vname=캐릭터/애니.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copyright.or.kr>.

Daum, www.daum.net, 검색어: 계약,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15493&q=%EA%B3%84%EC%95%BD>.

Naver, www.naver.com, 검색어: 계장의 종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jo44444444&logNo=150139233994>.

ABSTRACT

An analysis on the possession and infringement of copyright on the contents-related contest exhibit

Park, Keong-Cheol · Jung, Sun-Mee

As contest exhibits have been activated, a variety of organizations are holding contest with various purposes. Analysis on the guidelines prepared by various sponsoring bodies ranging from public organizations to privately owned businesses shows that sponsoring bodies tend to possess copyrights of entries.

Parts of guidelines of contest exhibit are the contract. While sponsoring body shows its opinion on copyright through guidelines, individual participant tends to consider it simply as a form to submit for contest exhibit rather than a contract. Now is the time to bring out a question in respect of the copyright on the contest exhibit. The important fact is that copyright on corporate contents is important, but copyright on individual contents is equally important and it must be protected and respected.

This study aims to bring out a question on copyright by analyzing possession and infringement of copyright that stands forth in the guidelines of contest exhibit. Provisions on copyright of contest exhibit play a role as a contract. Provisions on copyright of contest exhibit shall be the ones which can be understood and accepted by both sponsoring body and winner who are the A and B of a contract. For this, change in perception of sponsoring bodies ranging from public organizations to privately owned businesses with prominent position is strongly required. For the foregoing, First, Indication of Copyright: Clear and concrete terms must be used. Second, Scope of Interpretation: Concrete and detailed indication must be made for preventing indication that allows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Third, Cost for Author's Property Right: In case sponsoring body needs to possess or use the author's property right of prize-winning work, proper rights on use considering prize money corresponding to possession or use of author's property right must be indicated. Fourth, Term of Use: The term for using author's property right must be indicated. Fifth, Scope of Rights: The scope of author's property right that sponsoring body requires must be limited and indicated. Sixth, Mutual Respect: Items related to copyright must be indicated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bilateral contract founded on mutual consideration and respect, not on the concept of unilateral contract.

Key Word : contest, copyright, ownership of copyright, literary piracy

박경철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교수
(100-25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Tel : 062-230-7812
manphist@hanmail.net

정선미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대학원 박사과정
(100-25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Tel : 062-369-1321
sunlight3398@hanmail.net

논문투고일 : 2012.11.01
심사종료일 : 2012.12.05
게재확정일 : 2012.12.10